

2019년도 제9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성원이 되었는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구매팀장)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6조에 의거, 재적위원 8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안건은 한 건입니다. 『제주공동물류센터 위탁운영 용역』 변경 계약 체결의 심의 건입니다. 모쪼록 심도 있게 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11호 『제주공동물류센터 위탁운영 용역』 변경 심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부서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부서장 (물류관리팀장)	<<제2019-11호 부의안건 설명 >>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부서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제주도의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수탁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는 OOO에서 이 사업을 대행해서 운영해왔습니다. OOO에서 운영할 당시 일년 사업비가 약 1억2천만원 ~ 1억5천만원 정도였습니다. 도에서 우리공사가 이 사업을 운영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3년차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3년차 운영을 해오면서 사업비가 3배 조금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본 사업은 도내 중소 제조기업 물류비를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화물 종류에 따라서 PLT당 당 3만원, 4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홍보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도 올렸습니다. 사업이 활성화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도에서 추경을 통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여기 맞춰서 사업비를 늘리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계약금액은 정산하는 건가요?
위 원 장	예.
◎ ◎ ◎ 위 원	<p>심도 있는 내용 보다는 법조문을 조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거법령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자체법 22조, 시행령 74조 1항 1호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1항에는 1호가 없고, 아마 지금 보기에는 4항에 1호인 것 같고요, 그리고 4항을 보시면 이게 지금 74조 1항을 인용하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74조 1항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감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시행령 74조에 9항을 보니까 9항에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1 내지 8항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이요 조항에 따라서 74조 1항 4호 이렇게 가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p>
△ △ △ 위 원	<p>기본적으로 물품이나 용역은 공사의 설계변경 기준을 따라가는 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말씀하신 내용을 쓰는 게 맞는데 보통은 이렇게 쓰고 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p>
◎ ◎ ◎ 위 원	<p>전 그래서 당연히 법률에 흠결이 있는데 관행상 이렇게 하는가 했는데 정확한 적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p>
△ △ △ 위 원	<p>제가 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메일로 사전에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단가금액인데 계약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궁금해서 먼저 메일을 드렸더니 이 운영금액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계약에 대한 각종 보관방법이나 운반방법 등에 대한 단가계약 단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수량에 따른 변경금액이 산출됐다는 것은 정확히 답변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던 걸로 보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p>
□ □ □ 위 원	이 건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맞습니까?

발언자	발언내용
간 사	계약 변경할 때,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원래 계약금액이 소진되면 계약종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방법으로 계약을 할지 변경이 적절한지 하는 부분은 심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와 사업부서가 판단하기에는 시점으로 봐서 대형 사업이고 올해 말에 끝나서 그 다음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사해서 변경으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안건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 □ □ 위 원	변경계약 체결의 건이 아니라 공동물류센터위탁운영에 피치 못할 사유가 발생했으니 이 방법에 대해서 향후 진행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심의해주세요, 이거네요
간 사	원칙대로 하면 저희가 새로운 공고를 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어서 계약심의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적절성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안건을 올리게 됐습니다.
□ □ □ 위 원	그런 맥락이라면 지금 사업기간이 2개월이 채 안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고, 사업의 특성상 당초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가 계약 내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물동량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은 당연한, 합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서 여기서 크게 고민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 사	금액 부분이 크게 증액되는 건이 아니라면 부담이 덜할 텐데 금액 자체가 당초 계약금액의 2배 이상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의해주셨으면 했습니다.
△ △ △ 위 원	사실 최적가치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은 어떻게 조건을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초 계약자에 대한 용역 수행에 대한 질의 같은 것은, 품질 같은 것은 검토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물론 인정할 만하시니까 추가 변경계약을 하시려고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었는데 궁금하긴 합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제안부서장	<p>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공동물류사업 이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기업들을 모아서 이용자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쪽을 통해서 실제 이용기업들의 불만사항 등을 청취해 봤을 때 이게 이전에 운영하던 업체보다는 확실히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기업은 일정물량이 되어야 이번 사업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한 PLT라도, 소량이라도 공동물류에 이용할 수 있게 조건을 완화시켰습니다. 공동물류센터가 도내 화북에 있고, 도외 김포 쪽에 있는데 이전에는 김포센터까지만 배송을 시켜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업체는 센터만이 아니고, 저희 제주도 이용기업의 납품처까지 이송해주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 이용기업 협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p>
위원장	<p>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이전 업체보다 배송 서비스망이 더 넓고 세세히 설계가 되어있어서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과거에는 한번에 4PLT 정도 되어야 물류 수거를 해줬는데, 지금은 한 PLT라도 배송을 해주다 보니 이용기업도 늘고 물량도 늘어난 상황입니다.</p>
◇ ◇ ◇ 위원	<p>본 건의 경우에는 제안사항은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건데 그 원인이 대행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이른바 운영 물동량이 늘어났다 것으로 용역 과업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비용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것의 적절성은 인정이 됩니다.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적법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 가지, 용어를 정확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법률용어로는 변경계약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상 그렇게 쓰지는 몰라도 의결주문 자체에 정확한 법적 용어를 사용해서 ‘위탁운영 용역과업 증가로 계약금액 증액·변경내용의 계약체결이 필요 한 바’ 로 다듬으면 좋을 것 같고, 제안사유에서 보면 ‘계약금액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합니다’라는 부분을 ‘계약금액 증액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로 법률용어를 다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p>

발언자	발언내용
간 사	네.
▽ ▽ ▽ 위 원	저도 한 가지 배웠습니다. 변경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 ◇ ◇ 위 원	관행상, 실무상 잘못된 건데 그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겁니다. 계약은 법률적 용어로 이야기 하면 정형계약과 비정형계약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이라고 해놓고 용역에 따른 금액이 증액되는 걸로 종전의 계약을 변경해서 체결하겠다는 그런 얘기니까, 그걸 다듬으면 제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한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 ◎ 위 원	계약 자체가 지금 1년도 채 안 되는 계약인데요, 계약기간이 맞다면 2019년 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초 계약했을 때의 세배에 이르는 증액이 이루어지는 건데, 혹시나 제3자 입장에서는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물량이나 금액을 적게 산정을 해서 들어왔다가 계속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간 것을 뭔가 불합리한 뭔가가 있었지 않았나하고 오해할 소지는 없었던 것인가 싶습니다. 물동량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최소한 1.5배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3배면은 이거는 좀 아주 예외적인 계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공사에서는 이런 계약들이 자주 있어서 아니면 보통 이렇게 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는가요?
위 원 장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배 이상 금액 내지는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었고, 다만 사업비 자체는 전년도 사업 기준에 따라서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서비스 업체가 바뀌다보니까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되다가 보니까는 당초 좀 늘어날 걸로는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늘어날 것으로는 솔직히 저희도 잘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간 사	물량은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고, 업체에서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 ▽ ▽ 위 원	단가만 업체가 제안한 거군요.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도에서 물량, 사업비 책정해주면 저희가 내용을 기초로 입찰에 부쳤던 사항입니다.
제안부서장	당초 계약금액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2억3천만원 수준인 것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나간 금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2억3천만원 정도 작년에 지출했는데, 그보다 약 10%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도에서 예상해서 물량이라든가 금액을 산정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입찰을 나갔던 것입니다.
○○○ 위원	제3자가 보기에 당초 계약금액이 2억3천만원 정도라서 큰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입찰에 참가할 가치가 적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왔는데, 사실 처음부터 5억이었으면 아무래도 입찰에 참가하는 풀이 넓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오해의 소지가 혹시라도 제기가 된다면 그에 대해 합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내년에 입찰할 때는 공고문에 현재 사업계획 예산 상 이 정도의 예정 가격으로 출발하지만 사업자의 성과에 따라서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입찰에 부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도에서 예산을 더 줄지 안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 위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으니까요.
◇◇◇ 위원	사전규정이 없더라도 일단은 사업이 활성화 되서 금액증가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건 이 계약체결에 따른 사정이 변경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걸 증액되는 거죠. 관련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등에도 그런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위원장	물론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걸 보면 도에서 예산을 증액해주고 의회에서 동의해주고 하는 과정에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우리가 미리 조건으로 달기는 조금 어렵죠.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 위원님께서 굳이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의문을 가졌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한번 관련 위원회에서 걸러서 도로 올라가면 심도 있게 심의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수탁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 질 수 있을 겁니다.
◇ ◇ ◇ 위 원	관련내용에 다 동의했으니까 원안의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들	네, 네
위 원 장	원안의결에 모두 동의함에 있어서 제2019-11호 『제주공동물류센터 위탁운영 용역』 변경 계약 체결의 건은 원안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정확한 법률용어 사용을 향후에 부의 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원안의결로 마무리 하겠습니다.